

산재되어 있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본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구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재지)로 이전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생활중심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학생교육원분원”의 명칭을 “생활체험의 집”으로 변경하여 그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군(현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소재지)으로 이전하며, 일부 본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됨

- 여학생교육원 분원은 1984년부터 현재의 송파구 장지동에 소재하는 한국어린이육영회의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생활체험이나 식사예절, 가정생활등의 내용을 가지고 3박4일과정으로 편성하여 1기당 430명 가량의 교육생을 배출해오고 있음(전년도 교육실적 총11,498명)

※ 여학생교육원 임차료는 2001년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2002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하였으며, 연간 임차료는 약2억4천만원임.

- 동 교육원은 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13명 정원(시간강사 등 43명은 별도)에 금년도 예산액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9억3천만원임
- 동 교육원 임차계약 만료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전기로 하였으나, 이전기로 한 종로구 사직동 소재 구 교육연수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인접한 매동초등학교 운동장부지와 중첩관계로 학부모로부터 이전반대 청원이 제기되어 이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학생교육원 본원이 있는 가평으로 이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여짐.
-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 교육원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양성평등의 교육이념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3년 전부터 남학생도 대상으로 혼합반을 편성하여 교육을 해왔고, 이번에 이를 반영하여 여학생교육원의 명칭도 “생활체험의 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육기능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번에 여학생교육원이 가평본원으로 이전케됨에 따라 현재 가평본원에서 실시중인 지도자 중심의 교육(2박3일 또는 3박4일 과정 176명 수용) 과정은 7월 31일부로 폐지되고 가평본원도 종로구 사직동에 소재하는 구 교육연수원 자리로 이전케 됨
- 통상 교육원 본원은 주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곳에 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생교육기관은 본원을 포함하여 3개 분원과 4개 야외교육장 모두 경기도 일원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 및 기획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본원의 위치는 서울시교육청 인근에 소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봄.
- 다만, 이번 여학생교육원과 본원의 이전은 적절한 공간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은바, 향후 적절히 분산된 교육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설별 특성화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짐.
- 그 밖에 “분원”의 명칭을 삭제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원 소재지의 주소가 변경된 것은 지목변경 등 행정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 106번지 1호”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구 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 재 지	비 고
분 원	생활체험의 집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87-1	
	대성의 집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85	
	대천임해수련원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055	
야외교육장	모현야영수련장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산 25-1	
	퇴촌야영수련장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4	
	천마의 집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1-1	
	축령산야영수련장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133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1
------	-----

2003년 3월 19일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의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2003년 3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이봉화)

-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 1.10) 및 동조례시행규칙 개정(2003. 1.15)으로 인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보건복지국장·시정기획관)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결산기한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당연직 비상임이사중 시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함(안 제9조 제1항)
 - 보건복지국장·시정기획관→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
 -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함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

-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비상임이사 직명을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현재 ‘보건복지국장·시정기획관’을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하는 것은 시장의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것